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5203650 판결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배정호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피고 B은 2014.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 2) 원고는 2014.경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를 통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소외 회사의 송금 등

- 1) 원고는 2014. 5. 13. 피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억 원 중 7,5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4,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위 4,2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6. 13.부터 2014. 12. 12.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 15.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대전고등법원 2016나13343 판결 등

-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6나13343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으로써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대전고등법원은 2017. 1.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B의 개인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송금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전혀 없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6. 13.부터 2015. 1. 15.까지 매달 3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2014. 6. 13.부터 2014. 12. 12.까지 매달 300만 원을 송금한 주체는 피고 B이고, 소외 회사 명의로는 2015. 1. 15. 1회 300만 원이 송금되었을 뿐이다.

- 피고 B이 작성한 금융거래내역에 B이 매달 송금한 300만 원에 대하여는 ‘2억 원 대출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 회사 명의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송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이 소외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하였던 2억 원 중 일부가 다시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억 원의 차용 주체를 소외 회사로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송금한 2억 원의 대가로 B이 F 사업을 위해 설립할 예정이었던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G에게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F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B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전소의 제기 등

1) 원고는 2017.경 피고 B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9645 ;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위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만 청구한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 B에 대한 소를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2018. 6. 14.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가 피고 B이 2020.경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0나118023).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B의 아버지인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 9. 유족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H이 사망 전인 2007. 1. 1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 C에게 상속함을 유언한다'는 취지로 유언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2016. 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소 및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율을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소으로써 구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소가 일부 청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본안 전 항변).

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상황이 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할테니 위 돈으로 연체된 보험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송금에 의하여 송금한 2억 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전 소송에서 대여금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에까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유보한 대여금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송금으로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 B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이 계속중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 전소의 제1심 법원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에서 명시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여금 중 나머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설령 위 추완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소와의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해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송금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6.

13.부터 2014. 12. 12.까지 자신의 명의로 매월 일정한 금액 300만 원을 송금하고, 소외 회사의 명의로 2015. 1. 15.경에도 일정한 금액인 300만 원을 송금한 점, 위와 같이 매월 일정하게 송금된 300만 원은 2억 원의 월 1.5% 즉 연 18%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과 대전고등법원이 위 법원 2016나13343 사건에서 이 사건 송금으로 송금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판단한 내용과 그 근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으로써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소외 회사가 원고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 등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으로써 대여받은 2억 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대여일인 2014. 5. 13.부터 2015. 1. 12.까지 8개월분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인 2015. 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이 사건 전소에서 확정된 2014. 5. 13.자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2471 판결로 확정된 2013. 11. 28.자 주식대금반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상속인 I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3)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

4) 피고 C은 위 채권자대위권행사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피고 C을 상대로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목록

서울 강남구 대 224.6㎡

2. 건물목록

서울 강남구

알씨조 평스라브 다가구주택(15가구)

지층 131.51㎡

1층 131.51㎡

2층 131.72㎡

3층 117.67㎡

끝.

